

통상근로계수

[시행 2018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82호, 2017. 12. 29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9, 8832

I. 통상근로계수

통상근로계수는 73/100으로 한다.

II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7-82호, 2017.12.29.>

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